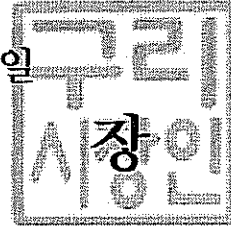


공 시 송 달 공 고

구리타워 레스토랑 사용료 및 소송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 및 체납 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.

2015년 9월 4일

구 리 시



1. 제 목 : 구리타워 레스토랑 사용료 납부독촉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 : 2015. 9. 4. ~ 2015. 9. 18. (14일간)
3. 대 상 자

대 상 자	주 소	채납내역	비고
남선희	강원도 홍천군 서면 한서로 2**	구리타워 레스토랑 사용료 및 소송비용 등 (264,374,480원)	

4. 공시송달 내용

가. 구리타워 레스토랑 사용료 및 소송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아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

나. 2015년 9월 18일까지 경기도 구리시청 자원행정과(☎031-550-2478)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,

다.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, 「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(예금압류 포함)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자원행정과(☎031-550-2478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5. 기타 문의사항 : 구리시청 자원행정과 (전화 031-550-2478, FAX 031-550-2096)

